

2020년도 제10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: 2020. 6. 16.(화요일)
- 방 법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: 신창환 위원(분과위원장), 김연희 위원, 심장섭 위원, 최현용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2건(안건번호 제2020-46682호~제2020-46781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상기 안전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함.
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.
- B 위원: 일본만화 방송물인 "사랑하는 소행성" 등을 인터넷에 불법으로 전송 또는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할 사항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토록 권고함이 타당함.
- C 위원: 안전번호 제2020-46682호~46781호{■■■■■} 사이트의 '(방송)공정 드래곤즈(2020)' 등 222건의 게시물}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D 위원: 본건 심의 대상 안전은 모두 저작권법상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.

**2020년 제107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**

2020. 6. 16.

분과위원장 신창환

위원 김연희

위원 심장섭

위원 최현용